[등록번호] 20100100237 [최초 등록일] 2010.05.24 [최종 등록일] 2024.09.23.

# 全别出处外社

#### 정보공개서

(주)소래버섯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소래버섯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54번길 <del>25-10</del>

[전화번호] 080-431-0201 [팩스번호] 031-317-3660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080-431-0201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 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	랜드	주 소				
	소래버섯나라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54번길 25-10				
(주)소래버섯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번호	대표팩스번호
(十)公明中久	2009.06.25		2009.06.25	홍재령 080-431-0201 031-317-36		031-317-3660	
	법인등록번호 135511-		-0201984 사업자등록번호		루번호	140-81-36751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단계	사업(경	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	홍재령	소 레 비 서 나 크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54번길 25-10			
45	중세성 	소래버섯나라	홍재령	080-431-0201	031-317-3660	
7 <b>L</b> x l	-1.11		경기도 시	흥시 장곡로 54년	번길 25-10	
감사	유선희	소래버섯나라	홍재령	080-431-0201	031-317-366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소래버섯나라	
상 호	소래버섯나라 OO점	

# 生别出处什计

		상표출원
상표(서비스표)	변수교수교수전문점 수 2시 당시 6시 1시-2 사 및	4020230070254
	7 / 1	(2023.04.19.)
광 고	在知识外对	
그 밖의 영업표지		

#### 소래버섯나라는 한국 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선도합니다.

사보사보 고유의 맛을 발전 시켜 잊혀져가는 우리 음식을 알리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기 위해 최상의 신선한 재료로 맛을 내고 옛 조상들의 선맛을 빚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맛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소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식문화와 멋을 즐기고 느낄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끼의 식사로도 <mark>마음</mark>의 여유와 편안함을 드리는 계기가 될 것입 니다.

음식의 맛과 미를 되살리고 음식재료의 청정함에서부터 음식을 담든 그릇까지 고객을 위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언제나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 5.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7,306	431,200	-403,893	85,709	-34,211	-14,431
2022년	38,599	448,774	-410,174	127,410	-17,134	-6,280
2023년	35,653	463,716	-428,062	141,563	-17,800	-17,888

- 그 근거자료는 [별첨] 합니다.
- 2) 당사의 최근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左别出处计计

가맹사업	.l =	시로 된 기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홍재령	대표이사	2009.6.~현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비관련 임원	유선희	감사	2018.3~현재	감사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입	상근	비상근	[ 역천구(명)
2023년 12월 31일	2	0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소래버섯나라]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1×100年10日日日 1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영업장 내	출원	출원	주식회사	출원 중
(상표권)	사용	2023.04.19	4020230070254	소래버섯	<b>电记 6</b>

※ 당사의 상표는 현재 출원 중으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소래버섯나라]을 시작한 날: 2009년 8월 16일
- 2. [소래버섯나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래버섯	소래버섯나라	홍재령	2009.8. ~ 현재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54번길 25-10

#### 3. [소래버섯나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소래버섯나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소래버섯나라	한식	버섯샤브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717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8	0	8	8	0	9	9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	1	0	1	1	0	1	1	0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5	5	0	5	5	0	5	5	0
강원									
충북							1	1	0
충남	1	1	0	1	1	0	1	1	0
전북	1	1	0	1	1	0	1	1	0
전남									
경북									
경남			_						
제주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8	0	0	0	0	8
2022	8	1	0	1	0	8
2023	8	1	0	0	0	9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 [별첨]합니다.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소래버섯나라] 외에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 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 준

[소래버섯나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전년도 가면	생점사업자의 여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지역	전년도말	연간평균 1	매출액	연간평균매출	·액(상한)	연간평균매출	들액(하한)	可卫
71 7	가맹점수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6개월미만
		매출액	3.3m <sup>2</sup> 당	0 %	3.3m <sup>2</sup> 당	아인	3.3m <sup>2</sup> 당	영업제외
전체	9	471,347	5,941	1,695,000	21,428	122,500	1,250	
서울		해당없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5	465,925	5,752	1,695,000	16,950	122,500	1,250	
강원		해당없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 生别出处什计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가맹점은 POS상의 매출액(4곳)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맹점의 POS상의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가맹점(2곳)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수양 × 2,500,000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 공급하는 소스 1회 물량으로 생산되는 매출액이 약 2,500,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을 개시한 1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9	3,199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 生别出处计计

당사에서 [2023년]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一个七	十七	<u>기</u> 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川工
합계		2023.1~2023.12	0	0	0	
광고	소계		_	_	_	
판촉	소계		_	_	_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 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하은행	머리케너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02-756-0506
겐안는앵	멀티채널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교환386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점포임대관련 비용]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11,000 ]				
가맹비 <sup>①</sup>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제공 시 해당 대가는 제외하 고 반환 2. 영업 개시	만료시까지 일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 잔 여기간의 해당부
교육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시작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① 가맹비는 영업표지 사용대가(30%), Know-how 제공대가(30%), 개업지원 대가(30%), 매뉴얼 등 자료제공대가(10%)로 구성된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 금은 아래의 금액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1,000
최초 가맹비	5,500
최초 교육비	5,500

※ 당사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65㎡(50평)기준		231 m² (7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31,780	약2,635	172,370	약2,462			
필수설비 (정착물)	권유 ( <b>협력업체</b> )	31,900	약638	39,600	약566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1일 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당사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설되어야 함
간판	권유 ( <b>협력업체</b> )	8,800		9,900		"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간판, 선틴, 전단지 등

### 生叫出处小计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권유 ( <b>협력업체</b> )	71,500	1,430	100,100	1,43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1일 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3.3㎡ 늘어날 때마다 1,430천원 추가부담
테이블 /인덕션	권유 ( <b>협력업체</b> )	6,600/20 Ea		9,240/28 Ea		n	발주 전 계약해지	인덕션포함 좌식기준 2.5평당 1 테이블
POS	지정업체 ( <b>협력업체</b> )	1,980		2,530			발주 전 계약해지	
초도물량	가맹본부	11,000		11,000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별도공사비용: 철거공사, 전기승압, 냉난방, 가스, 닥트, 상하수도설비, 외부공사 등은 별도비용입니다. 개보수는 별도협의 합니다.]

[별도사입비용 : TV, 오디오시스템, 정수기, 전화, 인터넷, 커피기계, 물수건, 등받이 의자, 유니폼, 청소도구, 문구류, 소모품, 식자재 등은 별도비용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의 메기 가 사이 의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				
가맹점사업자	부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구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I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V.9. 광고 및 판촉 활동"] 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로열티	가맹본부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 하여 분담(※ 아래 참조)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전국광고 지역광고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연 440	교육 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운영교육/특별 교육 (추정비용)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生叫出处小计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권유 ( <b>협력업체</b>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Ⅷ.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권유 ( <b>협력업체</b>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W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 [ 광고분담기준 ]

과그 사건	부담비율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生叫出处小计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분기별 <b>1</b> 회	문의: 가맹본부	
711201	재고와 비교		□ □ ¬ /   O □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11ਰੇ 1ਨੀ	문의: 가맹본부	
외계시다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T의·/T명본구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 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최초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 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 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 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 生别出处什计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 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최초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받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 [5,500]천원(부가세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 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운영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당사로 반환하여 야 하고,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관련	계약조문
○ 당사의 핵심 Know-how 사용금지 ○ 상표, 상호 기타 일체의 영업표시의 사용 금지 ○ 간판 등의 일체의 영업표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 여야 함 ○ 임대물이 있을 경우 그 반환이 완료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보상이		7조

# 生别州父小社

완료되어야 함	
○ 전화 안내 중 당사의 상호 및 기타 유사한 안내문 삭제	
○ 당 가맹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	
○ "을"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미개봉이나 미사용의	
완전한 상품 · 자재에 한해 "갑"으로부터 구입한 금액의 70%로 반환을 요	
구할 수 있다. 단, 상품 · 자재가 파손, 변질된 경우 혹은 유통기한이 임박	99.7
하거나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조
○ 반품이나 하자에 관한 세부운영규칙이나 매뉴얼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다.	1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품목: 부동산.용역.설비 등]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해당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生别出处什计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 해당없음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고기버섯샤브			
한우버섯샤브	가맹점 여건에 맞게		
버섯돌솥밥	메뉴추가 가능함.		
얼큰한샤브 추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

### 生叫出处什社

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小 37,000		
소고기버섯샤브	中 48,000		
	大 59,000		
	/J\ 46,000		
한우버섯샤브	中 59,000	사전 통지	2024.3월 기준
	大 72,000		
버섯돌솥밥	8,000		
얼큰한샤브 추가	추가부담없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 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만 접종 립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버섯샤브샤브	소래버섯나라	해당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소재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는 반경 1KM, 그 외 지역은 반경	
1.5KM(단, 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m²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을"의 영업지역에서 제외)	

### 生别出处什计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 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		영업지역 변경(안)을
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서면으로 통지하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사 담당팀 검토 → 영	30일 이내에 동의
변동되는 경우	업지역 변경(안) 작성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가 있는 경우 15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서면 통지 → 가맹점	일 이내에 영업지역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사업자 동의 → 영업	재조정 완료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
인정되는 경우		<u>누</u>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 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 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 生别出处什计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生34月次4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 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5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5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5조

# な別出父母社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구 에서 샤피	계약조문
계약갱신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가맹비, 교육비, 상품대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필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당사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나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 변경한 경우	제6조
당사와 협의 없이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를 위반한 경우	제6조
당사의 동의 없이 상호협의하거나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
노후화된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의 당사의 정당한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6조
고객서비스불량과 제품가공, 처리의 미숙으로 소비자에게 년3회 이상의 항의가 있는 경우	제6조
'필수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수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를 위반 한 경우	제6조
가공방법, 판매상품의 종류, 판매방식, 적정재고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한 경우	제6조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이 유지되도록 당사로 으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미준수	제12조
당사 직원(슈퍼바이저)의 점포에 출입이 영업상태를 원활하게 점검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운영점검 결과를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청결한 점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실내장식, 집기, 설비 일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제품의 가공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당사의 이미지 및 서비 스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운영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1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 서비스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제공·판매한 경우	제21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

# 生叫出处什计

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경우	]된 제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6조 2항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	]을 제6조 2항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ㅇ	-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	<sup>]</sup> 성
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6조 2항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제0조 2명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추	l 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기(구 0회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해 제6조 2항 행
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시	· 항
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	나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 2항 가
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	J다
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6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 ]   기계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	│다 제6조 2항
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6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양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제 32 조

# 生别出处什计

[당사의 협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자가 다른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계약서(안) 검토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이 없으면 거부한
→ 승낙여부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것으로 결정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승인조건은 아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승인조건]

양도 승인 조건	관련 계약조문
당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	제 17 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및 당사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	

# 生别出处好计

#### 제하는 경우

-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 기 위해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하는 교 육을 완료한 경우
-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당사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 험. 재정능력에 부합한 경우
-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당사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 규정을 지키 겠다고 서명하는 경우
- 영업양수인이 교육비 등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 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 가맹 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해당없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소래버섯나라]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生别出处什计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샤브샤브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소래버섯나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生别出处什社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1분기	가맹점관리팀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가맹점관리팀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분기	가맹점관리팀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년	가맹점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사전에 제공합 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 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 4 1 A A		과고 서겨	부담비율		분담 절차	ਸ] ਹ
干七	장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임 설사	비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 점분담액 명세서를 통지 → 가맹점 광고 불참시	대중매제   광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사유를 당사에 서면제출 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함 → 통지 후 7일까지 가맹 점분담액 입금 →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시작 → 가맹점사업자 사용내역 요청시 당사는 제 시함	행사 지역별 행사)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조문 제 28 조 ["을"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 ① "을"은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② "을"은 "갑"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갑"이 작성한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인 쇄 또는 복사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표하는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규정	관련	계약조문
① 점포개설 후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		
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 일금 이십만원(\2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② 점포개설 전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8조 1항의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		
우, 제8조 1항의 가맹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제 (	9 조의 2
③ 제2항의 위약금의 지급은 가맹비에서 이미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공제하고 이후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		
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生别州父母社

④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매장면적(m²)X지체일수X1,5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이 계약상 "갑"에게 부담하는 금전 지급 채무를 지체한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 30 조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10페이지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희망자 상담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9페이지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10페이지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

# 生别出处好计

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비고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메비케	관련
가맹분쟁 	계약조문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을"이 "갑"을 상대로 소	제 35 조
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 사유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담	○간판교체 비용
비용항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1007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기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부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비용비율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기타 단기	
	1
	(현, 기정근무과 기정점사업사인 필도의 법의가 있는 경우 1현의 심위대 에서 분할지급 가능)
	에서 눈될지ㅂ /F&/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화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다만, 귀하는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 生34月次4升

	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
비용부담 제외사유	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해당없음				
무상대여	애정없금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CRM	해당없음				진행시
테스터	해당없음				사전협의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 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 리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문의: 가맹관 리팀

# 生别出处什社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운영 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1개월 전에 <u>교육시</u> 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u>교육시간</u>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全别出处好计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가세포함)	비고
개업 교육	3일(1인기준)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운영 교육	2일(1회 1일, 1인기준)	년 220	추정금액
특별 교육	2일(1회 1일, 1인기준)	년 220	추정금액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통지 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수준 입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될 수 있음	제10조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수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됨	제6조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제5조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左别州处山北

[별첨] 2021, 2022, 2023년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左别州处山北

[별첨] 가맹점리스트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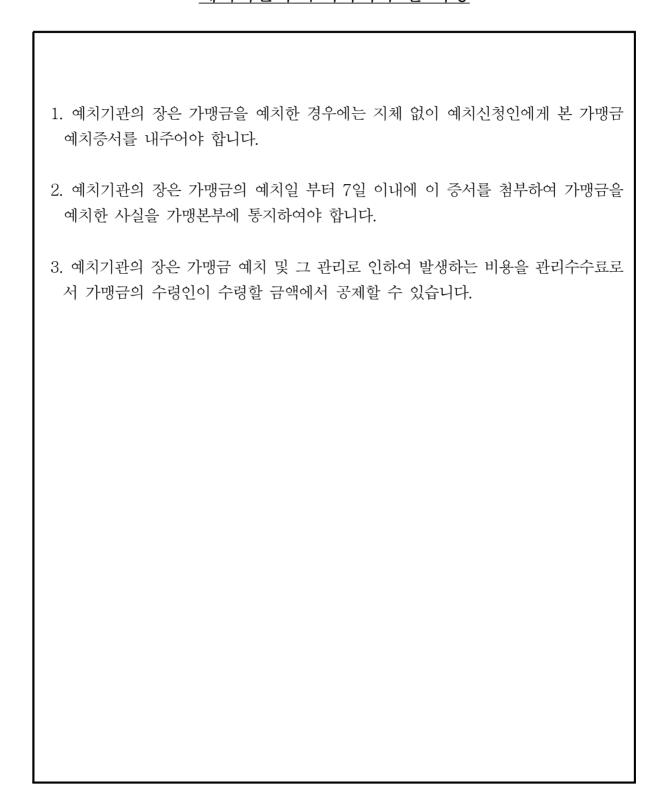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서식] (앞 쪽)

- , ,,						(32 1)
		기메그	તી કો ઢો ઢ	1 24		처리기간
		가맹금예치신청서		즉시		
	상호(가맹점)명				,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	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맹사업거래의 공정 제2항에 따라 위의					
		년	월	일		
		신청인:			(서기	명 또는 인)
예?	치기관의 장 귀	ਨੌਮੇ				
	지점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소래버섯]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 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u>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u>를 제공합니다.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기 수령(	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의 내용을 기	l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	점현황문서(	)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예시 :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b>?</b> )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투	브 :	(인) 또는 서명
		수 령 인	 <u>l</u> :	(인) 또는 서명
		················· (절	취선)	
정보	 공개서ㆍ가맹계익	<u> </u>	그가맹점혀	황문서 수령확인서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
맹희망자)에기	네 당 가맹사업의 <u>정보공</u>	공개서·가만	<u> 성계약서 • 인근</u>	<u>가맹점현황문서</u> 를 제공합니다.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민(가맹희망자)은 아래의	의 내용을 기		l 바랍니다.
상기 수령(	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 가맹계약서(		재하여 주시기	l 바랍니다. )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상기 수령(		), 인근가맹	재하여 주시기	
상기 수령(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	재하여 주시기	
상기 수령(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	재하여 주시기	
상기 수령( 정보공개서( ( 예시 : :	), 가맹계약서(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 인근가맹 <b>음</b> )	l재하여 주시기 점현황문서( 제공장소	